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전부개정 2019. 12. 17 내규 제695호
개정 2020. 12. 24 내규 제756호
2021. 5. 24 내규 제799호
2021. 7. 14 내규 제820호
2021. 10. 1 내규 제830호
2021. 12. 24 내규 제852호
2022. 12. 23 내규 제916호
2023. 8. 2 내규 제947호
2023. 12. 19 내규 제966호
2024. 12. 20 내규 제101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수

제2조(호봉승급) 호봉승급은 매월 초일에 하며,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조(제수당 지급기준 및 절차) 규정 제16조에서 정한 제수당 지급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휴가보상수당
 - 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
 - 나. 연차휴가보상수당은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7월과 12월 중에 지급한다.
 - 다. 연차계산 방법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2. 가족수당 <개정 2020. 12. 24>
 - 가.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 1) 배우자
 - 2) 본인 및 배우자의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자
 - 3) 20세 이하의 직계비속과 21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자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20세 이하의 자녀와 21세 이상의 자녀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자녀의 경우에는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다. 가족 및 나목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한 경우로 한다.
 - 라. 나목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또는 부부가 직원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
 - 마.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포함)는 별지 제1호서식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계존속과 별거하는 경우 장남 및 장녀(장남 및 장녀가 사망한 경우 차남 및 차녀)인 직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바.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3. 열차승무수당 <개정 2020. 12. 24, 2021. 5. 24>
 - 가. 규정 별표3의 열차승무수당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승무사업소 및 7호선 승무분야 부서의 본선기관사
 - 2) 승무사업소 및 7호선 승무분야 부서의 운영 또는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3) 2호선 기지에서 차량입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나. 근무지정일을 기준으로 날수대로 계산한다.
 4. 기술수당 <개정 2020. 12. 24>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직군별 지급대상 및 자격종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격증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가장 유리한 자격증을 택일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3, 2023. 8. 2>
 - 나. 기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제수당 지급신청서를

-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기준일은 신청자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수당을 지급받던 중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직원은 이를 즉시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급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라. 기술수당을 지급받은 직원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 관청에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으로 선임 등록된 경우에는 안전관리 직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은 별표 2와 같다.

6. 안전(보건)관리직무수당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기관에 안전(보건)관리자로 신고된 자로서 지급대상은 별표 3과 같다.

7. 평가급

- 가. 사장 및 임원의 평가급은 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 나. 직원의 평가급은 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산출한 총액 범위 내에서 개인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과 같이 차등지급한다.

구 분	S	A	B	C
지 급 율(%)	120	100	95	70
인원배분(%)	20	40	30	10

- 다. 임·직원의 평가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4>

- 라. 비리 등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 7. 14>

- 1) 삭제 <2023. 12. 19>
- 2)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 3)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1개월은 30일로 계산)
- 4)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비리로 정계처분을 받은 자
- 5) 중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을 받은 자

8. 대우수당

- 가. 매월 1일이 아닌 월중에 지급대상이 될 경우,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나. 교육·출장·「취업규칙」의 휴가 이외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는 감하여 지급한다.

- 다. 대우수당 지급대상자가 월중에 신분변동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날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5. 24>

9. 위험수당

- 가. 규정 별표 3의 위험수당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전기파트 근무직원
- 2) 경정비팀(사무실 및 주재직원 제외) 근무직원
- 3) 중정비팀 입출장업무 담당직원
- 4) 2호선 경정비분야(고압전기 취급) 근무직원

- 나. 근무부서 변경으로 인하여 지급액이 변동된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날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5. 24>

- 다. 교육·출장·「취업규칙」상의 휴가 이외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일수만큼 차감하여 지급한다.

- 라. 직책수행비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0. 삭제 <2023. 12. 19>

11. 가계안정비

청원경찰에게는 가계안정비로 봉급의 150%를 지급한다.

제4조(급여자료의 통보)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승진, 승급, 휴직, 복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등 신분변동으로 보수지급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사항을 급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단수 처리) 보수 계산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3장 연봉재심청구 및 처리

제6조(연봉재심위원회 설치와 운영) ① 규정 제31조에서 정한 연봉재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사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심결과 처리) ① 급여담당부서장은 연봉재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 개최 후 1주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심결과 연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연봉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장 후생비

제8조(직책수행비) ① 규정 제45조제1호의 직책수행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장 : 월1,000,000원

2. 감사 : 월1,000,000원

3. 본부장 : 월1,000,000원

4. 직원본부장 : 월1,000,000원 <개정 2023. 8. 2>

5. 직제규정 시행내규에 따른 보직자 :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8. 2>

6. 삭제 <2023. 8. 2>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직원이 교대근무자로 지정될 경우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8. 2>

③ 직책수행비를 지급받는 직원에게는 기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트장은 제외한다. <신설 2023. 8. 2>

제5장 학자보조금

제9조 삭제 <2021. 12. 24>

제10조 삭제 <2021. 12. 24>

제11조 삭제 <2021. 12. 24>

제12조 삭제 <2021. 12. 24>

제13조 삭제 <2021. 12. 24>

제14조 삭제 <2021. 12. 24>

제15조 삭제 <2021. 12. 24>

제6장 임금피크제

제16조(적용기준일)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3년 이내인 직원은 만57세가 되는 해에 출생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1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임금감액기간) 임금감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차 : 만57세 도달하는 날의 다음 반기 첫째 날부터 만58세 도달하는 날의 해당 반기 마지막 날 까지

2. 2년차 : 만58세 도달하는 날의 다음 반기 첫째 날부터 만59세 도달하는 날의 해당 반기 마지막 날 까지

3. 3년차 : 만59세 도달하는 날의 다음 반기 첫째 날부터 만60세 도달하는 날의 해당 반기 마지막 날 까지

제18조(임금감액률) 임금조정기간의 임금 감액률은 다음과 같다.

연령	만57세(1년차)	만58세(2년차)	만59세(3년차)
감액률	7%	12%	20%

제19조(임금감액 기준) 임금감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금피크제 적용 전 피크임금 대비 감액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2. 임금인상, 승진, 호봉승급 시에는 피크임금에 인상요인을 반영한 후 감액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3. 감액대상임금은 연봉제 직원의 경우 기본연봉과 통합수당으로 하며, 호봉제 직원은 통상임금으로 한다.

제20조(복지 등)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복지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21조(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금피크제 적용 전 퇴직금은 중간정산 하며, 이후 임금 감액률 변경 시 중간정산 한다.

2. 임금피크제 적용 전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내규 제3조제4호 및 [별표 1] 과 [별표 2] 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적용하며,
제8조제5호는 2020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21년 9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12. 24>

이 내규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에 열차관제사 수당 지급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제6호 및 [별표 2]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8. 2>

이 내규는 2023년 8월 2일부터 시행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12. 19>

이 내규는 202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 12. 20>

이 내규는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 12. 24, 2024. 12. 20>

직무별 기술수당 지급대상 자격종목 (제3조제4호 관련)

직군	기술자격종목	지급대상
관리	관리직군 이전 직군의 자격종목 적용	관리직군에 한함
사무	사무자동화	사무직군에 한함
전기전자	건축전기설비, 계측제어, 공정관리, 기계안전, 기계정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무선설비, 무선통신사, 발송배전, 방송통신, 소방, 소방설비(기계, 전기), 승강기, 인간공학, 일반기계, 전기, 전기공사, 전기안전, 전기용융, 전기철도,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조직용융, 전자기기, 전자응용, 전파전자통신, 정보기기운용, 정보통신, 철도신호,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설비	전기전자직군에 한함
시설환경	가구제작, 가스, 가스용접, 건설기계, 건설안전, 건설재료시험,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전기설비, 계측제어, 공정관리, 공조냉동기계, 금속재창호, 기계, 기계가공, 기계안전, 기계정비, 기계조립, 대기관리, 대기환경,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 미장, 방수, 배관, 비계, 비파괴검사, 산업계측제어, 산업기계설비, 산업위생관리, 상하수도, 석공, 소방, 소방설비(기계, 전기), 소음진동, 수질관리, 수질환경, 승강기, 에너지관리, 연삭, 용접, 위험물, 유리시공, 인간공학, 일반기계, 전기, 전기공사, 전기안전,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용융, 전자기기, 전자응용, 정밀측정, 정보통신, 조경, 조적, 지적, 철도토목, 측량,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밀링, 컴퓨터응용선반, 콘크리트, 타일, 토목,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특수용접, 판금제판, 폐기물처리, 품질관리, 플라스틱창호, 화공안전, 화공기사, 화약류관리, 환경	시설환경직군에 한함
차량	가스, 가스용접, 건설기계, 계측제어, 공유암, 공작기계, 공정관리, 공조냉동기계, 금속도장, 기계, 기계가공, 기계정비, 기계조립, 무선설비, 방송통신, 배관, 비파괴검사(방사선, 초음파, 자기, 침투, 와전류), 산업기계정비, 설비보전, 에너지관리, 연삭, 용접, 인간공학, 일반기계, 자동차정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용융, 전자기기, 정밀측정, 정보통신, 지게차운전, 차량, 천장크레인, 철도신호,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컴퓨터응용선반, 통신설비, 특수용접, 판금제판	차량직군에 한함

직군	기술자격종목	지급대상
승무	계측제어, 기계정비, 기계조립, 일반기계,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기기, 철도신호,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승무직군에 한함
기타	교통, 산업안전, 워드프로세스, 위험물, 정보처리, 정보관리,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컴퓨터활용능력, 철도운송	전직원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작응용, 전자기기, 전자응용, 정보 보안, 정보통신, 통신설비	전산업부 담당부서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모터카 운용부서

[별표 2] <개정 2020. 12. 24, 2021. 12. 24, 2022. 12. 23>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제3조 제5호 관련)

구분	지급대상
변호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 취득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회계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다.
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공인노무사에게 지급한다.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자격 취득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세무사에게 지급한다.
건축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취득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취득자로서 기록물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게 지급한다.
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자로서 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에게 지급한다.
간호조무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면허 취득자로서 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지급한다.
자동차운전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각종 장비 및 자동차 운전업무(중기조정 및 모터카 운전업무 포함)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
열차관제사	「철도안전법」에 따른 관제자격증 소지자로 열차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

[별표 3]

안전관리 직무수당 지급대상자

(제3조제6호 관련)

부 문	국 가 기 술 자 격 종 목	비 고
전 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소지자	
안전(보건)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소지자	
교 통	「교통안전법」에 따른 철도교통분야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방 화	「소방법」에 따른 소방설비분야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또는 방화관리자수첩 소지자	
무 선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분야 국가기술자격소지자	
가 스	「고압가스관리법」에 따른 가스분야 국가기술자격소지자	
항로표지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분야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별지 제1호서식]

부양가족(취득·상실)신고서

(제3조제2호 관련)

신청인	사원번호	소 속	직 급	성 명	
금회 신고 내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변동사유 발생일	
인원 현황	구 분	배우자	존 속	비 속	계
	신고전				
	신고후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제3조제2호에 따라 부양가족 변동 사항(취득, 상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을 첨부 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제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6호 관련)

- 지급구분란은 “신규지급”, “지급중지”로 구분 표기

- 소속장 판단란은 “가”, “부”로 구분 표기

첨 부 : 자격증 사본

년 월 일

신청자

1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1. 12. 24>